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-9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」 제894호 부칙에 의거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 연장(조례 제894호 부칙 제3조)

-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(안 제11조)

- 「부가가치세법」 일부개정(2013.7.26. 시행)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전부개정(2013.7.1. 시행)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전반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13. 10. 17. ~ 11. 6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- 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 의견
- 마. 2013년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3.11.14)
- 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사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20%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0%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5조”를 “제8조”로, “제8조”를 “제12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제2항 전단 중 “시세와 구세”를 “서울특별시 시세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(이하 “구세”라 한다)”로, “시세”를 “서울특별시 시세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(이하 “구세”라 한다)”를 “구

세”로, 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”를 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”로,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”를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조례 제89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“2013년”을 “2015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퍼센트

제11조(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(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)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,000분의 1.5를 적용한다.

제12조(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」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

제11조(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) ----- 제8조-----

--- 제12조-----

제12조(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」-----

제17조(감면신청 등) ①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(이하 “구세”라 한다)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·결정하고 그 내용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제894호, 2012.12.31>

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3

제17조(감면신청 등) ① -----

----- 구세-----

-----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--

② -----

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-----

제21조(시행규칙) ----- 시

행에 -----

부칙<제894호, 2012.12.31>

제3조(적용시한) ----- 2015

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
진다.

년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세무1과 이석우
연 락 처	02-3153-8702